

# 여객운송약관

2016. 03. 26.

공항철도주식회사

# [목 차]

<b>제1장 총칙</b> .....	<b>1</b>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약관의 적용)	
제4조(운송계약의 성립 및 약관에 대한 동의)	
제5조(여객의 의무)	
제6조(영수증 발급)	
제7조(운송의 거절 등)	
제8조(여객운송 계약 내용의 조정)	
제8조의 2(연계운송)	
<b>제2장 운임</b> .....	<b>7</b>
제9조(여객운임)	
제10조(여객운임의 할인)	
제10조의 2(특별할인)	
제11조(단수처리와 운임지불)	
<b>제3장 승차권 발매</b> .....	<b>9</b>
제12조(승차권류)	
제13조(승차권의 발매)	
제13조의 2(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의 발매 및 반환)	
제13조의 3(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의 제한사항)	
제13조의 4(수도권용정기권의 발매 및 반환)	
제14조(예약취소 및 취소수수료)	
제15조(승차권의 확인)	
제16조(승차권 유효성)	
제17조(승차권의 유효기간)	
제18조(개표 또는 집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의 처리)	
제19조(승차권 반납)	

**제4장 여객운송 ..... 13**

- 제20조(반환)
- 제21조(변경)
- 제22조(부가운임)
- 제23조(승차권 분실)
- 제24조(열차운행 불능 시 반환 등)
- 제25조(열차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제공)

**제5장 휴대품 ..... 16**

- 제26조(휴대 금지품)
- 제27조(휴대품 제한)
- 제28조(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경우)

**제6장 회원 ..... 17**

- 제29조(회원 가입)
- 제30조(회원정보 변경)
- 제31조(회원정보 이용)
- 제32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
- 제33조(승차권 예약서비스 제공과 제한)
- 제34조(정보 제공)
- 제35조(회원 탈회)
- 제36조(회원 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제한)
- 제37조(회원에 대한 통지)

**제7장 직통열차 연계승차권 이용 ..... 19**

- 제38조(분실)
- 제39조(열차지연)

**제8장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 21**

- 제40조(탑승수속)
- 제41조(탑승수속 업무시간)
- 제42조(탑승수속 마감시간)
- 제43조(탑승수속 거절)

제44조(이용객 의무)  
제45조(수하물 위탁)  
제46조(수하물 개장)  
제47조(손해배상)

**제9장 보칙** ..... 22

제48조(회사의 책임 등)  
제49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부칙** ..... 23

**별표** ..... 27

# 여객운송약관

[제정 2006. 11.28, 규정 제20606055호]  
[전문개정 2007. 03.20, 규정 제20607024호]  
[부분개정 2007. 05.31, 규정 제20607040호]  
[부분개정 2007. 07.30, 규정 제20607046호]  
[부분개정 2008. 01.18, 규정 제20608001호]  
[부분개정 2008. 07.31, 규정 제20608022호]  
[부분개정 2008. 10.09, 규정 제20608032호]  
[부분개정 2008. 12.31, 규정 제20608040호]  
[부분개정 2009. 07.27, 규정 제20609017호]  
[부분개정 2009. 09.11, 규정 제20609036호]  
[부분개정 2010. 01.28, 규정 제20610003호]  
[부분개정 2010. 10.01, 규정 제20610046호]  
[부분개정 2010. 12.29, 규정 제20610056호]  
[부분개정 2011. 04.15, 규정 제20611022호]  
[부분개정 2011. 06.28, 규정 제20611029호]  
[부분개정 2011. 07.27, 규정 제20611034호]  
[부분개정 2011. 11.26, 규정 제20611051호]  
[부분개정 2012. 02.27, 규정 제20612051호]  
[부분개정 2012. 11.12, 규정 제20612111호]  
[부분개정 2013. 12.13, 규정 제20613061호]  
[부분개정 2014. 06.25, 규정 제20614023호]  
[부분개정 2015. 06.27. 약관 제20615016호]  
[부분개정 2016. 03.26. 약관 제2061601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에서 운영하는 철도(이하 “공항철도”라 합니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간의 여객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차권류”라 함은 “승차권,” “1회용교통카드”, “교통카드”, “직통열차 연계승차권”을 말하며 회사와 여객간의 여객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증표로서 승차권발행방법에 따라 구분합니다.
2. “승차권”이라 함은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방식의 IC칩을 내장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저장(기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3. “1회용 교통카드(이하 ”1회권“이라 합니다.)”라 함은 연계운송을 위해 공항철도 승차권과 수도권도시 철도의 승차권을 1장으로 하여 열차이용

- 에 필요한 사항을 IC칩에 기록 후 회사 또는 수도권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발매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4. “교통카드”라 함은 승차권을 대용하는 카드로서, 무선주파수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개집표기에 접촉만으로 운임이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 가. “선급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입력(이하 “충전” 이라합니다.) 하고 그 충전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운임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 나. “후급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운임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 다. “우대용 교통카드”라 함은 공항철도 일반열차와 수도권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선·후급교통카드를 말합니다.
    - 라. “청소년용 교통카드”라 함은 청소년 할인대상자가 교통카드발행사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선급교통카드를 말합니다.
  5. “카드사업자”라 함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신용카드업자 또는 교통카드발행사업자로서 회사와 따로 계약한 자를 말합니다.
  6. “열차”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일반열차와 직통열차를 말합니다.
    - 가. “일반열차”라 함은 좌석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역에 정차하여 운행 하는 열차를 말합니다.
    - 나. “직통열차”라 함은 도중역에 정차하지 않고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간 을 운행하는 열차로, 좌석 또는 승차호차를 지정하는 열차를 말합니다.
    - 다. KTX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KTX열차를 말하며, 코레일 일반열차라함은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등을 말합니다.
    - 라. “공항직통”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의 시스템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지칭하는 공항철도 노선의 직통열차를 말합니다.
  7. “여행시작”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역에서 승차권류를 개표 한 때를 말합니다.
  8.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개정 ‘12.11.12>
  9. “유아”라 함은 만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직통열차의 경우 만 4세 미만을 적용합니다.
  10. “어린이”라 함은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및 초등학교 학생을 말합니다. 다만, 직통열차의 경우 만 4세 이상 만 13세 미만을 적용합니다.
  1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 만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개정 ‘13.12.13>
12.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13.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14. “국가유공자”라 함은 아래 각호의 법률에 의한 해당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애국지사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 “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이라 함은 회사가 별도운임체계를 적용하는 구간(청라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에서 사용구간, 사용기간, 사용횟수를 정하여 사용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개정 ‘13.12.13>
- 가. “수도권용 정기권”은 수도권도시철도 구간 및 회사가 수도권도시철도 운임체계를 적용하는 구간(청라국제도시~서울)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급카드 형태의 승차권을 말합니다. <개정 ‘13.12.13>
16. “수도권도시철도”라 함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신분당선(주), 용인경량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경기철도(주)**가 운영하는 도시철도구간 및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전철구간을 말합니다. <개정 ‘15.6.27> <개정 ‘13.12.13>
- 가. “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이라 함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을 말합니다. <개정 ‘13.12.13>
  - 나. “공항철도 수도권구간”이라 함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서울역 구간을 말합니다. <개정 ‘13.12.13>
17. “연계운송”이라 함은 연락운송을 하는 운영기관이 관할하는 구간과 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 운임을 각각 적용하되 합산하여 1장의 승차권으로 연결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연락운송”이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17조에 따라 공항철도수도권구간과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 서울메트로구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구간, 인천교통공사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구간, 신분당선구간 간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13.12.13> <개정 ‘12.11.12>
18. “보증금”이라 함은 여객이 1회권 구입 시 운임 외에 1회권 보증금으로 추가로 지불하고 도착역에서 보증금환급기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19. “직통열차 연계승차권”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직통열차와 한국철도공사의 좌석지정열차(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를 상호 연계하여 이용하는 사람과의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증표로서 승차권 발행방법 및 형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바코드 승차권 : 운송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가 읽고 입력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문자나 숫자를 흑과 백의 막대 기호와 조합한 코드를 광학식 마크판독장치로 자동판독 할 수 있도록 승차권 전면에 인쇄한 승차권
  - 나. 자성승차권 : 앞면에는 운송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인쇄하고 뒷면에는 자기정보(MS : Magnetic Stripe)에 이를 기록한 승차권
  - 다. 자가인쇄승차권(Home-Ticket) :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한국철도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 장치로 출력한 승차권
  - 라. 스마트폰승차권(Smartphone-Ticket) : 인터넷 통신과 컴퓨터 지원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 또는 승인한 전용 프로그램(Application)에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전송받은 승차권
  - 마. 모바일승차권(Mobile-Ticket) : 휴대전화로 한국철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
  - 바. 휴대폰문자승차권(SMS-Ticket) :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한국철도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송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
20. “직통열차 연계승차권 예약”이라 함은 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계승차권 구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이라 함은 서울역에 소재한 공항철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말합니다.
22. “항공사”라 함은 회사에 탑승수속 업무를 위탁한 항공사를 말합니다.
23. “다인승차권(이하 “다인권”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서 공항철도구간(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개정 ‘14.06.25>  
<개정 ‘13.12.13>
24. “쿠폰” 이라 함은 회사 또는 계약업체에서 발행한 직통열차 승차권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증을 말합니다. <신설 ‘12.11.12>



**제3조(약관의 적용)** ①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에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회사가 정한 내부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는 그 특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회사는 적용법령 개정 등 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을 역 또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 등에 공지합니다.

④연계운송 시 공항철도에서는 1~3항을 적용하고, 수도권도시철도 및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해당 운영기관의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⑤직통열차 연계승차권의 경우 공항철도 구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을 적용하며,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한국철도공사의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4조(운송계약의 성립과 약관에 대한 동의)** ①회사와 여객과의 운송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됨과 동시에 여객은 이 약관에 의거하여 정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13.12.13>

1. 승차권을 결제하거나 발권(구입)한 때
2. 교통카드 사용자는 여행시작을 한 때
3. 무임으로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시작을 한 때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승차권을 다른 사람(제3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권사용자(제3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5조(여객의 의무)** 여객은 다른 여객 또는 철도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회사 직원의 직무상 지시, 승차권류 또는 신분증, 각종 증명서 확인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제6조(영수증 발급)** ①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정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에 따라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국세청 승인번호를 기록하여 발급합니다. 여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12.11.12>

②여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합니다.

**제7조(운송의 거절 등)** ①회사는 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킬 수 있으며, 여행시작전인 여객은 운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해물품 또는 위험물을

휴대한 경우

2.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하고 있는 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철도안전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 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철도사업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정승차자가 부가운임의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5. 직통열차의 출발시각 5분전까지 직통열차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6. 회사의 허가 없이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유아가 만 13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8. 여객의 휴대품이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항철도 시설물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②제1항에 정한 사유로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객을 하차시킨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여행시작 전 : 운임
2. 여행시작 후 : 열차승차전인 경우에는 기본구간의 운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열차승차 후에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제8조(여객운송 계약 내용의 조정)** ①회사는 철도안전법 제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열차고장, 철도설비 고장 등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운행시각의 변경
2. 열차운행 취소(또는 중지)
3. 출발역, 도착역 변경
4. 승차권의 발매 제한

②회사는 원활한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 제한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역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공지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1. 승차권 발매역, 발매시간, 발매방법, 예약
2. 승차역,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
3. 운임 할인 또는 반환
4. 휴대품의 종류, 크기, 무게 등
5. 교통카드의 이용

**제8조의 2(연계운송)** ①연계운송운임은 제9조에 정한 일반열차 공항철도 독립운임 구간운임과 연락운송구간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운임할인은 각 운영기관의 약관을 관할구간에 대해 별도로 적용합니다.

③회사는 여객이 교통카드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여행개시 시 해당 운송기관의 기본운임을 차감하고, 여행종료 시 제1항의 운임차액을 추가차감 합니다.
2. 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 역에서 승차하여 공항철도 환승게이트 또는 9호선 환승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환승게이트에서 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 운임을 중간 정산합니다.

④회사는 여객이 교통카드 미소지 시 1회권을 다음과 같이 발매합니다.

1. 영수액은 제1항의 교통카드 기준 연계운송운임에 100원을 추가하고, 보증금 (5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결제방법은 현금으로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보증금을 공제하고 발행합니다.
2. 여객은 하차역에서 1회권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훼손된 1회권은 훼손책임이 여객에 없는 경우에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여객은 제1항의 운임변동 시 차액을 정산하고 새로운 1회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2장 운임

**제9조(여객운임)** ①회사는 여객운임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한 별표 제2호의 여객 운임을 받습니다.

②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의 운임은 해당 구간의 여객운임에 40회를 곱하고 15%를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수도권용 정기권의 운임은 별표 제5호와 같습니다.

**제10조(여객운임의 할인)** ①어린이 운임은 제9조에 정한 여객운임에서 공항철도 수도권구간은 350원을 공제하고 50%할인하여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하고, 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은 50%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 '15.06.27>

②다음 각 호의 여객에 대하여는 일반열차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노인 : 무임
2. 장애인 : 무임

3. 국가유공자 : 무임
  4. 청소년 : 청소년용 교통카드 사용 시 제9조에 정한 여객운임에서 공항철도 수도권구간은 350원을 공제하고 20%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하고, 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은 20%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 '15.06.27>
  5. 조조할인 : 선후급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당일 오전 06:30분까지 승차한 경우 기본운임의 20%를 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구간이 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이거나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개정 '15.06.27>
- ③유아는 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어린이 운임을 받습니다.
1. 좌석을 지정할 때
  2. 보호자 1명당 유아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유아
  3. 보호자를 동반한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
- ④제2항 할인은 해당 교통카드로 승차(개표)하거나, 승차권 구입 시 해당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하차역에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2가지 이상의 운임 할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제10조의 2(특별할인)** ①회사는 영업정책 상 여객운임을 특별 할인 할 수 있습니다. <개정 '12.11.12>

1. <삭제 '12.11.12>
2. <삭제 '12.11.12>
3. <삭제 '12.11.12>
4. <삭제 '12.11.12>

②특별할인 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12.11.12>

**제11조(단수처리와 운임지불)** ①운임계산 시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12.11.12>

1. 공항철도 수도권구간
  - 가. 1회권 : 30원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 나. 정기권 : 50원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2. 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
  - 가. 1회권 및 정기권, 다인권 : 50원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개정 '13.12.13>

나. 할인운임 : 25원 미만은 버리고, 25원이상 75원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5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개정 '13.12.13>

3. 청소년 교통카드 운임은 5원미만은 버리고, 5원이상은 10원으로 합니다.

4. 직통열차 운임은 50원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100원으로 합니다.

②운임 및 수수료 지불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12.10.27>

1. 일반열차 : 선·후급교통카드, 현금

다만, 1회권, 수도권 정기권은 현금으로만 지불가능합니다.

2. 직통열차 : 선·후급교통카드, 현금, 신용·체크카드(1,000원 미만 제외), 쿠폰

3. 현금 및 신용카드간 혼용하여 지불할 수 없습니다.

③회사는 신용카드로 지불된 승차권이 변경, 예약취소 및 반환 등으로 환불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지불내역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시에는 신용카드사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④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지급한 자기앞수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객이 이서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거절하는 경우

2. 전산·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3. 1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제시하는 경우

## 제3장 승차권 발매

제12조(승차권류) 여객이 열차별로 사용하는 승차권과 교통카드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일반열차

가. 어른 일반열차승차권

나. 어린이 일반열차승차권

다. 할인 일반열차승차권

라. 선급교통카드

마. 후급교통카드

바. 정기권(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 및 수도권용)

사. 1회권

아. 일반열차 어른 다인승차권 <개정 '13.12.13> <신설 '12.11.12>

자. 일반열차 어린이 다인승차권 <개정 '13.12.13> <신설 '12.11.12>

2. 직통열차

가. 어른 직통열차승차권

- 나. 어린이 직통열차승차권
- 다. 직통열차 연계운송승차권
- 라. 직통열차 교통카드 이용고객용으로 등록된 교통카드
- 마. 직통열차 어른 다인승차권 <개정 '13.12.13> <신설 '12.11.12>
- 바. 직통열차 어린이 다인승차권 <개정 '13.12.13> <신설 '12.11.12>

**제13조(승차권의 발매)** ①회사는 직통열차의 승차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발매합니다.

1. 승차일, 승차열차, 승차시각, 좌석번호 등 승차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합니다.
2. 승차권발매는 출발 5분 전까지로 합니다.
3. 회사는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었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객이 제25조에 정한 지연료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승차권을 발매합니다. <개정 '12.11.12>

②회사는 일반열차의 승차권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매합니다.

1. 승차일, 승차열차 및 사용기간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2. 제10조 제2항의 무임여객에 대하여는 해당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무대용 승차권(1회권)을 발행합니다.
3. 2명이상의 일행이 승차일시, 승차열차, 승차구간 등 동일한 운송조건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승차권을 1장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할인여객은 제외합니다. <개정 '14.06.25>

**제13조의 1(공항직통 승차권의 예약)** 공항직통 승차권의 예약에 관해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및 회원제도에 따릅니다. 다만, 공항직통 승차권에 대한 포인트 제공 및 사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3조의 2(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의 발매 및 반환)** ①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사용구간, 사용횟수를 입력하여 발매하며, 기존 이용자의 재발매 시 사용기간 시작일은 재발매 요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7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정 '13.12.13> <개정 '12.11.12>

②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의 사용횟수는 기기오류, 열차지연으로 인한 미승차 등을 고려하여 15회를 추가한 55회로 하며, 사용기간은 30일간으로 합니다. <개정 '12.2.27>

③여객은 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의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제3호에 의한 최저수수료를 받고 재발행합니다. <개정 '12.2.27>

④여객은 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을 구입한 후에 운임이 변동되어도 교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12.2.27>

⑤여객은 사용한 횟수가 33회 이하이고 사용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의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독립운임구간 정기권운임에서 사용구간의 여객운임에 사용한 횟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개정 '12.2.27>

**제13조의 3(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의 제한사항)** ①여객은 정기권으로 사용구간을 벗어난 역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구간을 지나서 하차한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구간 이외의 승차구간에 대한 여객운임을 별도로 받습니다. <개정 '12.2.27> <개정 '11.4.15>

②회사는 정기권이 개표(여행시작)되면 열차승차와 관계없이 사용횟수 1회를 공제하며, 여객은 미승차를 이유로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회사는 여객이 정기권을 개표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대한 여객운임을 수수하며, 여객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제22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④여객은 정기권 분실 시 즉시 역에서 재발행을 받아야 하며, 분실로 타인이 사용 또는 환불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의 4(수도권용정기권의 발매 및 반환)** ①수도권용 정기권 카드는 여객의 부담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충전 시 지정한 사용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60회 사용 시까지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정기권 운임을 재충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11.4.15>

②회사는 수도권용 정기권 사용 여객이 개표(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제5호에 정한 종별 1회권운임을 반환합니다. 다만, 개표(여행시작) 후 수도권용 정기권 사용구간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일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충전한 기관의 역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11.11.26>

③여객이 수도권용 정기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기권을 충전한 기관의 각 역에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반환금액은 사용일수와 사용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카드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 계산 시 반환당일은 제외합니다.

1. 사용일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사용일수×별표 제5호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2회)

2. 사용횟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사용횟수×별표 제5호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

④운임이 조정되었을 경우 제3항과 같이 반환하거나,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여객의 착오로 잘못 충전한 정기권 및 사용 중 정기권의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의해 반환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⑥제4항의 의한 반환금액 계산 시 단수처리는 제11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예약취소 수수료)** 여객이 한국철도공사 시스템으로 예약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와 예약발권한 승차권을 결제시점으로부터 10분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개정 '11.7.27>

**제15조(승차권의 확인)** ①여객이 여행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는 승차권의 확인(역무자동화기기 또는 직원)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승차권 유효성)** ①여객 1인은 승차권 1매를 그 승차권의 유효기간 내에 표시사항과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회사에 변경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차권의 훼손,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회사에서 승차권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운임의 차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어른 승차권을 어린이 또는 할인대상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하는 경우
3. 직통열차승차권으로 동일한 승차구간의 일반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4. 일반열차승차권으로 동일한 운임구간에 승차하는 경우

③후급교통카드는 여행시작 전에 유효기간 경과, 사용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유효한 상태이어야 하며, 선급교통카드는 여행시작 전에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④여객은 일반열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한 후에 운임이 변동된 경우에는 여행시작 전에 변동된 운임의 승차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남은 금액은 반환하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받습니다.

⑤회사는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내의 도중역에서 하차하여 자동집표기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하차역 이후의 구간은 무효처리 합니다.

**제17조(승차권의 유효기간)** ①승차권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직통열차 승차권 : 승차권 발매 시 지정한 열차의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개정 '13.12.13>

2. 일반열차 승차권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에 표시된 동일한 운임 구간내, 여행시작 후 5시간
3. 교통카드 : 여행시작 후 5시간

②여객은 제1항 제2호, 제3호에 정한 시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5시간마다 별표 제1호에 정한 기본운임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18조(개표 또는 집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의 처리)** ①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표 또는 집표가 안 되는 경우에는 회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 '11.4.15>

②여객이 여행시작 후 열차에 승차하지 아니하고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승차권은 무효처리하여 회수합니다.
2. 교통카드는 기본운임을 수수하고 정기권은 사용횟수 1회를 감합니다. 다만, 선후불교통카드 사용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다시 개표하여 운임이 부과된 경우 첫 회에 한하여 해당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해당역에 재개표에 의한 부과운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여객이 열차승차 후 하차역에서 집표를 하지 않고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승차한 구간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개정 '12.11.12>

1. 승차권 소지 시 : 이용한 구간의 운임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지한 승차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 수수
2. 정기권 소지 시 : 왕편은 사용횟수를 1회 공제 후 제13조의 3을 적용하고, 복편은 이용한 구간의 여객운임을 추가 수수
3. 교통카드 소지 시 : 이용한 구간의 운임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운임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 수수

④선·후급교통카드 이용 여객이 승차 후 하차역에서 집표를 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다음 이용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임 정산 후 이용제한을 해제합니다.

**제19조(승차권 반납)** 여객은 열차승차 후 역에 하차 시 회수대상 승차권은 자동개집표기에서 회수합니다. 다만, 제24조, 제25조에 의해 운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제4장 여객운송

**제20조(반환)** ①여객은 여행시작 전에 승차권이 불필요할 경우 유효기간 내에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운임을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개정 '11.4.15>

1. 직통열차승차권

가. 열차출발 2일~1일전까지 : 별표 제3호에 의한 최저수수료

나. 출발 당일 출발시각 전까지 : 800원

다. 출발 당일 출발시각 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 1,600원

2. 일반열차승차권 : 없음

③여객은 운임반환사유 발생 시 지불한 운임을 초과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1조(변경)** ①직통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은 열차 출발시각전이거나, 여행시작전인 경우에는 다른 열차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11.4.15>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운임과 변경 전의 운임을 비교하여 부족액은 더 받고 남은 금액은 반환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 제2항에 의해 다른 열차로 변경 시 첫 회에 한하여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2회부터는 최저수수료를 받습니다.

④회사는 여객이 직통열차에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하였다도 유효기간내의 승차권으로 여행시작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에 의해 변경처리를 합니다.

⑤회사는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계속하여 승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1.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여객운임(할인은 할인운임)을 비교하여 부족액을 받습니다.

2. 선급교통카드에 남아 있는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여객운임보다 부족하여 교통카드로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교통카드 충전 후 집표할 수 있습니다.

3. 수도권용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지정된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제5호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횟수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제22조(부가운임)** 회사는 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정한 부정승차로 규정하여, 소지한 승차권은 무효로 회수합니다. 승차열차가 일반열차인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여객운임(어린이는 어린이 운임)에 1회권 기본운임의 30배인 부가운임을 합산하여 받으며, 직통열차인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별표 제2에 의한 여객운임에 그 10배인 부가운임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또한 승차역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승차열차의 처음 출발역 또는 하차역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역에서부터 승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13.12.13> <개정

‘10.12.29>

1. 승차권 없이 승차하였을 때
2. 할인승차권을 사용자격이 없는 여객이 사용하였을 때
3.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 확인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승차하였을 때
5. 제12조에 의한 열차종류별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제23조(승차권 분실)** ①회사는 여객이 여행 시작 전에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승차권을 재발행하거나 운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통열차승차권으로서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발매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수수하고 승차권을 재발행 합니다. <개정 ‘10.12.29>

②회사는 여객이 여행시작 후에 승차권을 분실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운임)을 수수하고 분실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교통카드는 분실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③여객은 분실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실한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23조제3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분실한 승차권의 사용(변경·반환 포함) 기록이 확인 된 경우
2. 분실증명서와 분실승차권 내용이 다를 경우

**제24조(열차운행 불능시 반환 등)** ①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중지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반환합니다. <개정 ‘12.11.12>

1. 직통열차 : 운임전액
2. 일반열차
  - 가.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 나. 선·후급교통카드 : 1회권 기본운임
  - 다. 정기권 : 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은 구간 1회권 기본운임,  
수도권 정기권은 종별1회권 운임
  - 라. 다인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②여객은 제1항에 의해 운행중지 된 열차의 승차권류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승차권류로 1년 이내에 역에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다음열차(타 교통편 제공 포함)로 목적지역까지 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④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12.11.12>

**제25조(열차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지급)** ① 회사는 열차운행 중지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시간이상 역에 하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하여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정 '12.11.12><개정 '11.4.15>

1. 직통열차(지연료) : 1시간 이상 지연 도착한 경우 : 5,000원
2. 일반열차(대체교통비)
  - 가.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 : 5,000원
  - 나.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
    - 1) 30분 이상 지연 시 : 5,000원
    - 2) 1시간 이상 지연 시 : 10,000원

②회사는 열차가 지연되어 여행을 마친 여객에 대해서는 제1항에 정한 금액을 지연료지급증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여객은 지연료지급증을 1년 이내에 역에 제출하여 지연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여행시작 전에 직통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환수수료 없이 운임을 전액 반환합니다. <개정 '12.11.12>

④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에 정한 운임만을 반환합니다.

## 제5장 휴대품

**제26조(휴대 금지품)** ①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또는 위험물
2. 동물. 다만, 애완용 동물은 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하여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예외로 합니다.
3.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4.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풍선류, 등)

②회사는 여객의 휴대품 중에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경찰의 입회하에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휴대품 제한)** ①여객은 제26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써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할 수 없는 물품(중량이 32kg 이상 또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이상)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접이가 가능한 운동 및 오락용구로써 중량이 32kg 이하 이고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m이내인 경우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
3. 당일 항공기 탑승권 혹은 예약권을 소지하고, 직원에 의해 휴대필요성이 인정되며, 회사의 여객운송을 위한 각종 시설물 및 열차 내 처리가 가능한 물품

③일반열차에는 제1항의 휴대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휴대하여 일반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휴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역의 혼잡도 등을 감안하여 직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철도 구간(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외에는 해당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개정 '12.11.12> <개정 '11.7.27>

④제3항에 의한 자전거 휴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지정한 호차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개정 '11.6.28>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8조(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경우)** 여객이 제26조 제1항의 휴대 금지품 및 제27조 제1항의 휴대 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제4호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 제6장 회원

**제29조(회원 가입)** ①공항철도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등록하고 회원가입 동의와 확인버튼을 누름으로써 회원으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1. 이름(ID 및 비밀번호 포함)
2. <삭제 '12.11.12>
3.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기타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하였을 때
2. 제2항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제30조(회원정보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1조(회원정보 이용)** ①회사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제29조 제2항의 회원정보를 공동사업자 또는 제휴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회원서비스 제공 등 제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32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 ①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 개인정보의 삭제는 회원탈퇴 조치를 한 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개인정보 관리자를 회원담당 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하도록 합니다.

**제33조(승차권 예약서비스 제공과 제한)** <삭제 `10.12.29>

**제34조(정보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의 여행상품, 서비스 이용방법, 여행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자우편, 서신우편, 무선단문메세지(SMS), 기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회원 탈퇴)** ①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변경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회원 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 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 `10.12.29>

1. 회원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
3.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 4.<삭제 `10.12.29>
5.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회원으로서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회원이 사망한 경우(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회원에게 대한 통지)** 회사는 회원 전체에게 통지 또는 공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7장 직통열차 연계승차권 이용

**제38조(분실)** ①여행시작전에 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여객운송약관 제16조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승차권(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승차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분실한 승차권의 운송조건 및 발권내역(발권 받은 사람에 관한 정보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좌석번호를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
3. 분실한 승차권이 사용된 경우

4. 분실한 승차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분실한 승차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1. 여행시작 전 : 분실한 승차권과 동일한 구간의 운임·요금
2. 여행시작 후 : 제1호에 정한 운임·요금과 이미 승차한 구간에 대한 여객 운송약관 제22조에 정한 부가운임을 합산한 금액

④제2항에 따라 승차권을 재발행 받아 도착역까지 여행을 마친 사람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실한 승차권 및 재발행 받은 승차권을 함께 역에 제출하고 제3항에 정한 금액에서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한 승차권이 사용(제7조의 반환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제2항에 따라 재발행 받은 승차권의 좌석번호가 열차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 좌석사용에 대한 권리는 승차권(재발행 받은 승차권이 아님)을 소지한 사람에게 있으며 좌석이 중복되어 자유석으로 여행한 경우에는 도착역에서 좌석운임요금과 자유석운임과의 차액에서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열차지연)** ①태풍·지진·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차권을 발권 받은 사람이 직통열차가 20분 이상, KTX가 20분 이상, 코레일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시작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수금액을, 도착역까지 여행을 마친 사람(2명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운임을 할인하고 1매로 발행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제외)은 승차일부터 1년 이내에 소지한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직통열차는 여객운송약관 제25조, KTX 및 코레일 일반열차는 코레일 운송약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12.11.12>

②제1항에 정한 지연시각은 여행시작 전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을, 여행시작 후에는 도착역 도착시각(환승승차권은 승차구간별 각각의 도착역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제1항의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여행을 마친 사람은 소지한 승차권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승차일부터 1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승차하고자 하는 열차)의 KTX 및 코레일 일반열차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운임·요금의 할인을 1회(1매)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연한 열차의 승차권을 발권할 때 수수한 KTX 및 코레일 일반열차운임(특실요금 및 침대요금 제외)을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정한 금액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④제3항에 따라 운임을 할인받는(또는 할인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할인금액이 새로 구입하는 승차권의 운임·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 청구
2. 운임을 할인받은 승차권을 반환하며 운임할인을 받기 위하여 이미 제출한 승차권의 재발행 또는 반환 청구

## 제8장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개정 '12.2.27>

**제40조(탑승수속)** ①탑승수속은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의 좌석배정, 수하물 수탁 등 회사가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한합니다.

②탑승수속 이외에 출국수속, 세관신고, 검역신고 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객의 책임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41조(탑승수속 업무시간)** 탑승수속 업무시간은 오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합니다.

**제42조(탑승수속 마감시간)**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탑승수속 완료시각 기준으로 탑승항공기 출발시각 3시간 전으로 합니다.

**제43조(탑승수속 거절)**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탑승수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항공사의 요구 또는 정부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체크인시스템 또는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의 장애로 단시간 내에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탑승수속이 일시에 증가하여 마감시간 내에 탑승수속이 어려울 경우
4. 열차사고, 열차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시간축박, 적용법령, 정부규정, 요구, 명령 또는 해당 항공사의 제한사항에 의거 탑승수속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한 경우
6. 탑승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이용객은 전항에 의해 탑승수속이 거절된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수속 및 출국수속 등을 하여야 하며, 탑승수속 거절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44조(이용객 의무)**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부주의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객은 일체의 여행서류, 비자를 취득하는데 책임을 지며 이용객이 입국 또는 일시 체류하는 국가의 모든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범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용객은 세관 및 기타 정부관리의 요구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사에 응해야 하며 수하물 검사에 임회하여야 합니다.

**제45조(수하물 수탁)** ①회사는 탑승수속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하물을 수탁합니다.

1. 중량 : 1인당 32kg 이내
2. 부피 : 수하물의 3변합이 158cm 이내
3. 수량 : 1인당 2개 이내

②회사는 전항의 제한을 초과한 수하물의 수탁은 별도 공지하며, 초과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중량, 부피에 의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④ <삭제 '13.12.13>

⑤회사는 수하물 처리시스템의 고장, 위탁수하물의 처리용량 초과 등 이례사항발생 시 수하물위탁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제46조(수하물 개장)** ①이용객은 수하물의 보안검색 시 제한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하물 개장 시 임회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이용객의 수하물 개장 임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의로 개장하고 그 사실을 이용객에게 통보합니다.

**제47조(손해배상)** 이용객은 수하물의 훼손, 분실, 탁송지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항공사는 국제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배상을 합니다.

## 제9장 보칙

**제48조(회사의 책임 등)** ①회사는 열차고장, 선로장애, 파업, 노사분규 등 회사의 책임으로 제8조에 정한 운송계약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이미 지급한 운임의 범위 내에서 반환합니다. 다만,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기본운임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운임을 반환합니다.

②회사는 여객운송 중 발생한 여객사상사고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정한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회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여객이 법령·정부기관의 명령이나 이 약관 및 이 약관을 근거로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여객의 휴대품 또는 기타 소지품의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시, 포함하고 있는 내용 중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료를 제외한 기타 자료의 정확도, 신뢰도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의 서비스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회사는 제28조 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9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이 약관은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약관 및 회사의 관련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률의 관례에 따릅니다.

②이 약관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국적과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에 불구하고 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며, 관할 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릅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특별할인 시행만료일) 다음 각 호의 운임할인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다만 2호, 3호, 4호의 경우로서 시행만료일이전에 발매된 경우에는 시행만료일에 불구하고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직통열차 이용자에 대한 특별할인운임 3,100원 적용
2. 정기승차여객에 대한 운임할인
3. 승차권 다량구매자에 대한 운임할인
4. 계약수송에 의한 운임할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특별할인 특례) ①시행만료일이전에 제10조의2에 의해 특별할인하여 발매된 승차권은 특별할인 기간만료일에 불구하고 그 승차권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제20조 2항 1호에서 정한 수수료는 직통열차 운임할인 기간 내에는 수수하지 않습니다.

제3조(예약서비스 중지) 제33조의 회원에 대한 예약서비스는 일시 중지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청라국제도시역 개통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제1호 : 기본운임 (10km 까지) <개정 '15.06.27> <개정 '14.06.25> <개정 '13.12.13> <개정 '12.11.12>

열차별	구간별	운임	비고
가. 일반열차	서울역 ↔ 청라국제도시역	1,250원	제16조 / 제17조 제18조 / 제24조 제38조
	청라국제도시역 ↔ 인천국제공항역	900원	
나. 직통열차	서울역 ↔ 인천국제공항역	2,872원	

※ 일반열차 기본운임 선후급 교통카드 기준

별표 제2호 : **역간 여객운임** <개정 '16.03.26> <개정 '15.06.27> <개정 '14.06.25> <개정 '13.12.13> <개정 '12.11.12>

□ 일반열차 - 어른 선/후급 교통카드 기준

(단위 : 원)

역명	서울	공덕	홍대입구	디지털미디어시티	김포공항	계양	검암	청라국제도시	영종	운서	공항화물청사
공덕	1,250										
홍대입구	1,250	1,250									
디지털미디어시티	1,250	1,250	1,250								
김포공항	1,450	1,450	1,350	1,350							
계양	1,650	1,550	1,550	1,450	1,250						
검암	1,750	1,650	1,650	1,550	1,350	1,250					
청라국제도시	1,850	1,750	1,750	1,650	1,450	1,350	1,250				
<b>영종</b>	<b>2,750</b>	<b>2,650</b>	<b>2,650</b>	<b>2,550</b>	<b>2,350</b>	<b>2,250</b>	<b>1,600</b>	<b>900</b>			
운서	3,250	3,150	3,150	3,050	2,850	2,650	1,900	1,400	900		
공항화물청사	3,850	3,750	3,750	3,650	3,450	3,050	2,300	2,000	900	900	
인천국제공항	4,150	4,050	4,050	3,950	3,750	3,250	2,600	2,300	1,000	900	900

※ 어린이 1회권 운임은 선후급교통카드 운임을 적용합니다.

□ 직통열차

구 간	구 분	운 임
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	어 른	14,800원
	어 린이	6,900원

**별표 제3호 : 최저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1 건당	400원	제7조 / 제13조의 2 제14조 / 제20조 / 제23조

**별표 제4호 : 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 시 부가운임 (1건당)**

구분	부가운임	비고
가. 제26조 1항 1호에 정한 위해물품	100,000원	제26조
나. 제26조 1항 1호 이외의 휴대금지품	10,000원	제26조
다. 휴대제한품의 제한을 초과한 물품	2,000원	제27조

**별표 제5호 : 수도권용정기권 이용거리, 운임 및 차감기준 <개정 '15.06.27>**

**□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서울전용	55,000	서울시계내	1,550	1,450

다만, 제13조의 4 제3항에 의한 계산 시 종별 교통카드 운임은 1,250원입니다.

**□ 거리비례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1	55,000	20Km까지	1,550	1,450
2	58,000	25Km까지	1,650	1,550
3	61,700	30Km까지	1,750	1,650
4	65,500	35Km까지	1,850	1,750
5	69,200	40Km까지	1,950	1,850
6	72,900	45Km까지	2,050	1,950
7	76,700	50Km까지	2,150	2,050
8	80,400	58Km까지	2,250	2,150
9	84,200	66Km까지	2,350	2,250
10	87,900	74Km까지	2,450	2,350
11	91,600	82Km까지	2,550	2,450
12	95,400	90Km까지	2,650	2,550
13	99,100	98Km까지	2,750	2,650
14	102,900	98Km초과	2,850	2,750

다만, 제13조의 4 제3항에 의한 계산 시 1단계 정기권의 교통카드 운임은 1,250원이며, 한국철도공사 구간 중 수도권외 구간은 정기권 이용거리와 무관하게 교통카드 편도운임 기준으로 정기권 종별 및 운임이 결정되며, 그 경우의 추가 차감 기준거리나 반환운임도 결정된 정기권 종별에 따릅니다.



□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1	20km까지마다 1회	8	58km까지마다 1회
2	25km까지마다 1회	9	66km까지마다 1회
3	30km까지마다 1회	10	74km까지마다 1회
4	35km까지마다 1회	11	82km까지마다 1회
5	40km까지마다 1회	12	90km까지마다 1회
6	45km까지마다 1회	13	98km까지마다 1회
7	50km까지마다 1회	14	추가차감 없음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